#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82

발의연월일: 2022. 9. 15.

찬 성 자:이수진 · 권칠승 · 김경만

김의겸 • 박찬대 • 신동근

양이원영 · 이인영 · 임호선

진성준 · 최기상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구비 지원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시설의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주거용 건축물은 재난으로 인한 복구 지원 대상이지만, 주거를 위한 필수 지원 시설인 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승 강기 또는 주차장 등은 재난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전통시장 및 소기업 등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시설물 복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전기실·변전

실·발전실·공기조화실·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 등의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66조제3항제2호). 또한 재난피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확대하고(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전통시장의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안 제66조제3항제7호의3 신설)하고자 함.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2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7의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 건축물 및 시설 복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및 그 부속시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 원 설(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 실·공기조화실·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3. ~ 7. (생 략) <신 설>

<신 설>

8. · 9. (생략) ④ ~ ⑦ (생략) -----

3. ~ 7. (현행과 같음)

7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 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7의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운영하는 점포에 피해를 입은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복구를 위한 지원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